

도시관리계획(시설:근린공원449호) 결정 의견청취안

의안 번호	943
----------	-----

제 출 일 : 2026. 4. 7.

제 출 자 : 남양주시장

1. 제안이유

-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훼손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에 대한 대안으로 사업지 외부의 개발제한구역 내 대체녹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금동 산1050-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(시설:근린공원449호) 결정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제6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2. 관계법령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

3. 주요내용

- 사업개요
 - 위 치 : 지금동 산 1050-1번지 일원
 - 부지면적 : 근린공원 신설(A=151,036㎡)
 - 제 안 자 : 남양주시장(미래도시과)
- 주요 입안 내용
 - 결정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(㎡)	최초 결정일	비고
신설	449	근린공원	근린공원	지금동 산1050-1번지 일원	151,036	-	

- 결정 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449	근린공원	• 근린공원 신설 - 151,036㎡	•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훼손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에 대한 대안으로 사업지 외부의 개발제한구역 내 대체녹지를 조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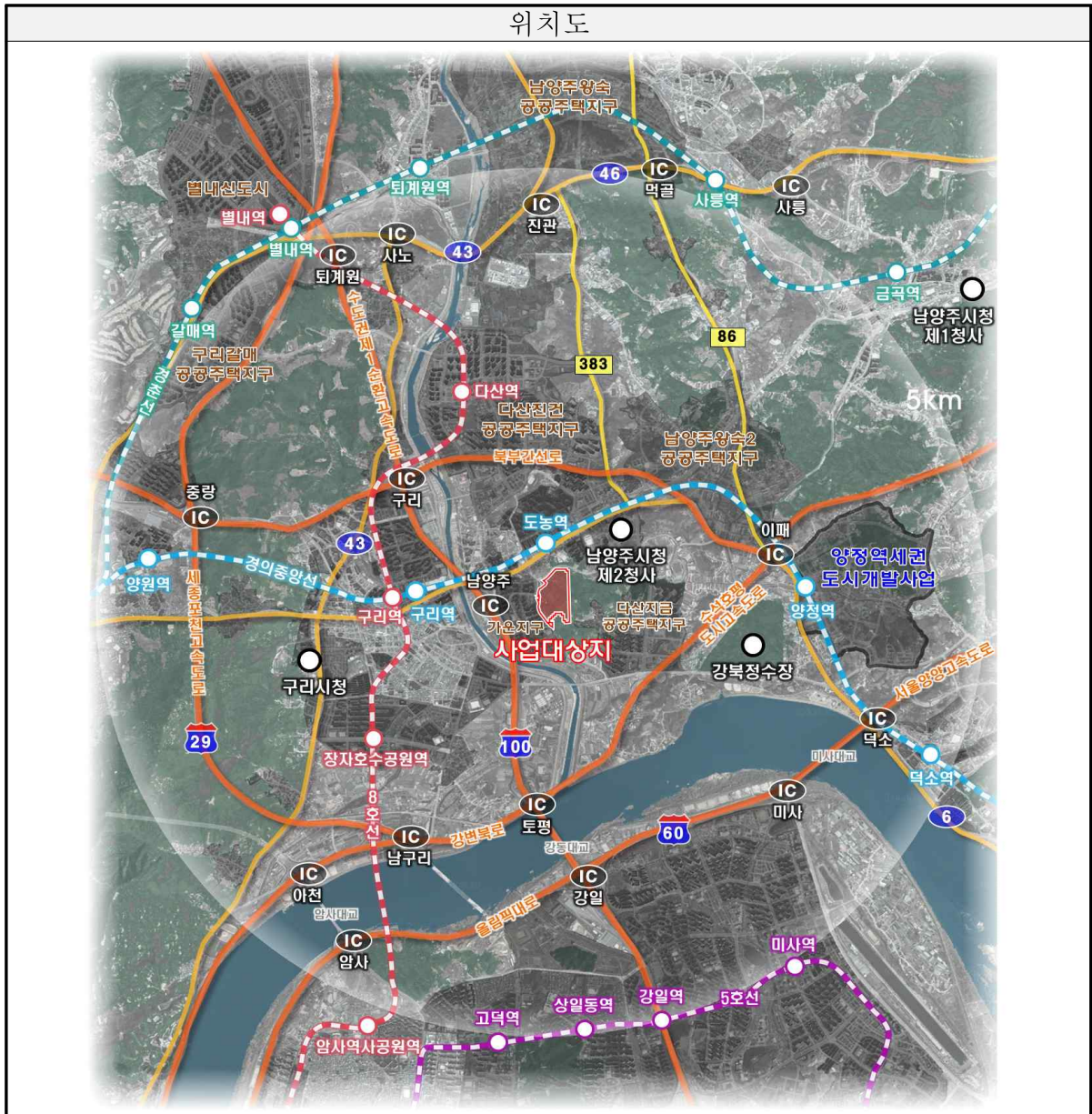
○ 추진현황

- 2025. 6. 23. : 도시관리계획 결정(안) 입안 요청
- 2025. 6. ~ 2026. 3. : 관련부서 협의 및 협의의견 조치계획 제출
- 2025. 8. 28. ~ 9. 11. : 주민공람·공고 ※주민의견 없음

○ 향후 추진계획

- 2026. 5. :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- 2026. 6. :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○ 관련자료



도시계획시설 결정(안)도

